

##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. 9. 29 조례 제2066호  
일부개정 2021. 6. 30 조례 제2140호  
일부개정 2022. 11. 11 조례 제2344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1. 11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22. 11. 11]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,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1. 11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자의 책무) 사용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)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1. 11>

제5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1. 11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에는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1. 11>

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 및 지원)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1. 11>

1.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
2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
3.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
4.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
5. 여성고용업종(「근로기준법」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)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업
6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[제목개정 2022. 11. 11]

제8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용인시 출자·출연기관,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2. 11. 11]

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“새일센터”라 한다)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 11. 11>

② 새일센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

1.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
3.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
4.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21. 6. 30]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2. 11. 11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 2022. 11. 11>

1. 새일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, 여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  - 가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
  - 나.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다. 관내 기업 관계자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1. 11>

[본조신설 2021. 6. 30]

제11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
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1. 6. 30]

제12조(포상)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·기업·단체 등을 선정하여 「용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1. 11>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. 6. 30]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. 6. 30]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6. 30 조례 제214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1. 11 조례 제234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.